

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4년도 제1회 신규채용시험 공고

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4년도 제1회 신규채용시험을
(전문직, 연구직)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26일
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

1.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(총 9명)

가.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

구분	직급(직류)	응시분야 (코드)	인원	근무예정지	담당업무
계			9		
1	의무전문관 (일반의무)	검시(A)	7	전국 (본원 및 지방연구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변시체 부검 검안 등 법의학적 감정 및 연구 • 범죄사건 및 사고조사에 수반되는 법의학적 연구 • 대량재해, 의료사고, 감염병 관련 법의학적 조사 및 연구
2	보건연구사 (약학)	독성학(B)	2	전국 (본원 및 지방연구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체시료의 법독성학적 감정 • 식품, 의약품, 생약 등에서 약독물 감정 • 생체시료(소변, 모발 등) 및 압수품에서 마약류 및 환각물질 감정 • 약독물 및 마약류 감정 관련 분석법 개발 및 연구

나. 공통자격요건 * 적용기준일 :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,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】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미경과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미경과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· 법원에서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를 선고받고 확정된 자 · 「공직선거법」 제266조에 따른 선거범죄자 · 「정치자금법」 제57조에 따른 정치자금범죄자 · 「병역법」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·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
- 6의2.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(횡령,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·확정 후 2년 미경과자
 - ※ '10.3.22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
- 6의3.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- ※ '19.4.17.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(15.12.24.~19.4.16.은 벌금 300만원 이상, 2년간)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※ '22.12.27.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
 - ※ '22.12.27.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※ '19.4.17.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미경과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미경과자

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(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)제1항】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경우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6.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 혁신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7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】 등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- **국가공무원법 제74조(정년)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**
 ※ 단,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조 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
- **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**
 ※ 복수국적자(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)가 본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입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

○ **응시연령(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)을 충족하는 자**

의무전문관, 연구사
20세 이상 (2004.12.31. 이전 출생자)

- **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**
- **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향후 6개월 이내 전역(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포함)이 가능한 자**

다. 선발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

<유의 사항>

- **응시자격요건**의 인정기한은 **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("24.1.19.)**을 기준으로 하며, **우대사항** 및 가점 인정기한은 **원서접수 마감일("24.1.5.)**을 기준으로 함

구분	직급(직류)	지원분야 (코드)	근무지역 및 인원	선발 분야별 응시자격요건
				우대사항 및 가점
1	의무전문관 (일반의무)	검시(A)	전국 7명 (본원 및 지방연구소)	○ 응시자격요건(자격증) - 의사면허 소지자
				○ 우대사항 -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연구실적 * 관련분야 : 법의학, 병리학, 해부학, 임상의학(영상의학, 진단검사의학, 내과, 외과, 산부인과, 소아과 등) * 연구실적은 2021.1.1. 이후 SCI(E), KCI(KSCI)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-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- 임상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* 영상의학, 진단검사의학, 내과, 외과, 산부인과, 소아과 등 -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 ○ 가점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 (2급이상) * 구체적인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
2	보건연구사 (약학)	독성학(B)	전국 2명 (본원 및 지방연구소)	○ 응시자격요건(자격증) - 약사 면허 소지자
				○ 우대사항 -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연구실적 * 관련분야 : 의약품 분석, 조제, 독극물 또는 마약류 분석 등 약학분야 * 연구실적은 2021.1.1. 이후 SCI(E), KCI(KSCI)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- 관련분야 석·박사 학위 소지자 * 관련분야 : 약물학, 생화학, 유전학, 면역학, 미생물학, 생약학, 분석화학, 독성학 -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 ○ 가점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 (2급이상) * 구체적인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

라. 선발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

- <공 통>** 모든 응시자는 '응시자 필수 제출서류' 미비할 경우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음
-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"서류제출 안내문" 반드시 확인 요함
 - 해외발급서류(경력, 학위)는 관련 제출서류에 대한 번역 및 공증을 받아 제출
 - 금번 채용선발에는 1명당 반드시 1분야에만 지원가능하며 중복지원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(중복 지원 불가)
 - 응시자격요건(자격증)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 응시가 능하나,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야 하며,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
 - ※ 응시자격요건의 정확한 기재가 없는 등 불명확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 - ※ 응시자격요건으로 인정된 자격증·경력·학위 등은 우대요건으로 인정 불가
 -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(전 분야 공통 : '24.1.19.)
 - ※ 최종(면접) 시험일까지 해당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부적격 처리됨
 - ※ 학위수여예정증명서의 경우 학위수여 여부는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
 - 상위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경우 하위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
 - 예시) 자격요건이 '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'일 경우 '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'도 응시요건 충족
 - 공고문상에서 기재한 안내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응시원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(기재내용 이외의 서류첨부 : 특허, 운전면허, 한자 등)
- <자격(면허)증의 범위>** 자격증요건으로 지원 시 아래 서류 미비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
- '자격증'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'국내 자격증'을 말함
 - 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면허증 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, 원서접수 시 시험 합격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, 면접시험 당일까지 취득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
 -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
 -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
 - ※ 자격증 사본 제출시 주의사항 :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은 자격증은 자격증번호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, 최신 자격증 사본을 제출.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

마. 선발 분야별 우대사항 및 가점사항

- <우대요건 공통>**
-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, 응시자격요건 이외의 우대요건(근무경력, 학위 및 자격증, 어학성적 등)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됨 (원서접수 마감일 : '24.1.5.)
 - 해외발급서류(경력, 학위)는 관련 제출서류에 대한 번역 및 공증을 받아 제출
 - 우대요건(근무경력, 연구실적, 영어성적 등)은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상한선을 넘지 못함
 -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"서류제출 안내문" 반드시 확인 요함
 - 공고문상에서 기재한 안내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응시원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(기재내용 이외의 서류첨부 등)
 -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(예 : 운전면허, 한자, 컴퓨터활용능력 등)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하지 말 것
- <관련분야 근무경력>**
- '관련분야 근무경력'은 기간별로 차등배점하며, 경력기간 우대요건 산정은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만 평가함
 - 기본서류 상의 경력은 경력(재직)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. 경력증명서에 근무시간(주당00시간), 근무기간, 직위(직급)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
 - ※ 경력인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에 첨부된 '서류제출 안내문' 확인 요함
 - 경력증명서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('24.1.5.)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(2023.7.6.이후 발급분만 인정)
- <관련분야 연구실적>**
- '관련분야 연구실적'은 관련분야 연구논문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점하며, 최근 3년간 SCI(E), KCI(KSCI)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(2021.1.1. 이후 게재된 논문에 한함)
 - ※ 해당 응시코드에 한함
- <관련분야 자격증>**
- '관련분야 자격증'은 동일계통 자격증이라면 우대요건 범위 내의 자격증 중

가장 유리한 것 1개에 대해 인정함

※ 예시) 기술사와 기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기술사만 인정

- 우대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중,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
-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※ 해당 응시코드에 한함

<관련분야 학위의 범위>

- ‘관련분야 학위’는 학·석·박사 학위가 제시된 경우 소지 여부로 차등 배점함
- ※ 해당 응시코드에 한함

<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의 범위>

- 외국어능력성적검정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가장 유리한 것 1개에 대해 인정됨
- 공고문 하단 “영어능력검정 성적 기준표”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영어능력검정성적(토익스피킹 등)은 인정하지 않으니 제출 금지
- ‘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’의 경우, 어학성적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차등 배점함 ((붙임2) 영어능력검정성적기준 참조)
- 어학성적 검증 가능 기간을 고려하여 '24.1.26.까지 유효한 영어성적만 인정
- ※ 해당 응시코드에 한함

<가 점> (※ 만점의 2%)

- 한국사능력검정시험(국사편찬위원회 주관)은 2019. 1. 1.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
-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는 등급과 관계없이 동일점수 배점

2. 근거 법령

- 「국가공무원법」 (법률 제19228호, 2023. 3. 4.)
- 「공무원임용령」 (대통령령 제33151호, 2022. 12. 27.)
-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(대통령령 제33657호, 2023. 8. 1.)
- 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(대통령령 제33156호, 2022. 12. 27.)

- 「전문직 공무원 인사규정」 (대통령령 제33150호, 2022. 12. 27.)
- 「공무원임용규칙」 (인사혁신처예규 제160호, 2023. 6. 30.)
- 「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」 (인사혁신처예규 제163호, 2023. 7. 27.)

3. 시험 방법

가. 서류전형

-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. 단, **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5배수 초과일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**
- * 서류전형기준 : 직무역량, 직무성과 및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, 경력, 연구실적, 외국어능력검정 성적, 기타 우대사항 등

나.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[면접방식] 담당예정업무 직무수행계획 관련 대면 면접 등

[평가요소]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
[합격자결정] ‘상’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

* ‘상’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‘중’의 개수가 많은 순위대로 합격자 결정

[불합격기준]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‘하’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‘하’(미흡)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

*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

4. 시험 일정

- 원서접수 : 2024. 1. 2.(화) ~ 1. 5.(금)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향후 일정 공고 : 2024. 1. 12.(금) 예정
- 면접시험 : 2024. 1. 18.(목) ~ 1. 19.(금) 예정
- 최종합격자 발표 : 2024. 1. 30.(화) 예정

※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,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홈페이지(<http://www.nfs.go.kr>)에 게재
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
※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5.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

가. 응시원서 등 서류 제출

- 제출기간 : 2024. 1. 2.(화) ~ 1. 5.(금), 18:00까지
- 제출장소 :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획전략과 성과인사팀 채용담당자 앞
(☎ 033-902-5064, ☎ 2646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0)
- 제출방법 : **응시원서 및 증빙서류 등을 동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**

※ 별첨 '서류제출 안내문'에 따라 작성·제출
※ 응시수수료(정부 수입인자) : 의무전문관 10,000원 / 연구사 7,000원
※ 2024. 1. 5.(금),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, 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
(다만, 동기접수에 한하여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)
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(차상위 계층) 또는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'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' 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(관련 증빙서류 제출)
※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지원자들의 휴대폰으로 응시번호 송부 예정

나. 서류전형합격자 서류 제출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)

- 제출기간 : 2024. 1. 15.(월) ~ 1. 19.(금) 18:00까지(서류합격자 발표 시 제공지)
- 제출장소 :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획전략과 성과인사팀 채용담당자 앞
(☎ 033-902-5064, ☎ 2646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0)
- 제출방법 : 기 제출 서류 외, **별도 서식 서류를 동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**

※ 세부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
※ 2024. 1. 19.(금),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, 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
(다만, 동기접수에 한해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)
※ 증빙서류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여부 조회예정, 제출된 서류(원본)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예정

다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, 이력서 및 증빙서류 등은 작성요령 및 첨부 시 유의사항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·첨부하여야 합니다.
-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, 응시원서 상 전화번호, E-mail 등 연락 가능한 정보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,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응시자의 경우, 연락 가능한 국내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*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
6. 기타 참고사항

-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 통지 이후라 하더라도 신원조사(조회) 및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.
- 「공무원임용령」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에 준용되지 않습니다.
- **채용분야 '전국'인 응시자는 합격 후 결원 상황에 따라 근무지가 정해질 예정이며,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(원주) 및 지방연구소(서울 양천, 경남 양산, 전남 장성, 경북 칠곡, 대전 유성, 제주)로 발령 예정입니다.**
-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,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.
- 최종합격자는 필수보직기간 경과 후, 본원(강원 원주) 및 지방연구소(서울 양천, 경남 양산, 전남 장성, 경북 칠곡, 대전 유성, 제주), 합동법과학감정실(경기 수원, 전북 전주, 충남 천안, 경북 포항)로 전보 또는 순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
-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, 허위사실 기재, 증명서 위조,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4조의2,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5장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장,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, 「국가공무원법」

제45조의2 및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,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. 또한, 다른 공무원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

-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이전의 근무경력을 감안하여 확정하며, 채용 전에 법령이 인정하는 경력(공무원 또는 민간 유사경력)이 있는 경우, 최대 100%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 확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, 응시자격요건(또는 우대요건)에서 인정되어 시험에 합격했다고 할지라도 호봉 확정 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자격요건 관련 서류 중 외국과 관련된 서류(학위증명서, 경력증명서 등)는 **공증을 받아서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**
- **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(예 : 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.**
-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.
-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◁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▷

인사혁신처 홈페이지(www.mpm.go.kr) - 참여민원 - 신고센터 - 인사신문고 -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

-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.
-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릅니다.
-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- 연 락 처 :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획전략과 채용담당(☎ 033-902-5064)
 - 메일주소 : dtg1136@korea.kr

<붙임_1>

직 무 기 술 서

근무예정지	임용예정 직급(직류)	지원분야(코드)	선발예정인원
전국 (본원 및 지방연구소)	의무전문관(일반의무)	검시(A)	7명
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의학 관련 업무 - 변시체 부검·검안 등 법의학적 감정 및 연구 - 범죄사건 및 사고 조사에 수반되는 법의학적 연구 - 대량재해, 의료사고, 감염병 관련 법의학적 조사 및 연구
------	--

필요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통 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 ○ (직급별 역량) 긍정성, 문제해결력, 관계구축력, 의사소통능력 ○ (직렬별 역량)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창의력
------	---
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의학, 병리학, 해부학 분야 지식 ○ 진단검사의학, 분자병리학 분야 지식 ○ 실험 및 데이터분석, 감정서 작성 등과 관련된 기본지식
------	--

응시자 자격 요 건	관련분야 : 검시(A)	
	자격증 *최종시험 면접 예정일 기준 (24.1.19.)	○ 의사 면허 소지자
우대사항 *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(24.1.5.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연구실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관련분야 : 법의학, 병리학, 해부학, 임상의학(영상의학, 진단검사의학, 내과, 외과, 산부인과, 소아과 등) * 연구실적은 2021.1.1.이후 SCI(E), KCI(KSCI)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○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○ 임상전문의 (영상의학과, 진단검사의학과, 내과, 외과, 산부인과, 소아과 등) 자격증 소지자 ○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영어성적은 검증가능기간을 고려하여 '24.1.26.자 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함 	
가점	○ 한국사능력검정시험(2급 이상)	

직무기술서

근무예정지	임용예정 직급(직류)	지원분야(코드)	선발예정인원
전국 (본원 및 지방연구소)	보건연구사(약학)	독성학(B)	2명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약독물 및 마약류 감정 및 연구 업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체시료의 법독성학적 감정 - 식품, 의약품, 생약 등에서 약독물 감정 - 생체시료(소변, 모발 등) 및 압수품에서 마약류 및 환각물질 감정 - 약독물 및 마약류 감정 관련 분석법 개발 및 연구 		
필요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통 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 ○ (직급별 역량) 긍정성, 문제해결력, 관계구축력, 의사소통능력 ○ (직렬별 역량)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창의력 		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약물학, 독성학, 위생약학, 생약학, 약품분석학 및 약사법 등 약학 분야 기본지식 ○ 실험 및 데이터분석, 감정서 작성 등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전산 관련 기본지식 		
응시자격요건	관련분야 : 독성학(B)		
	자격증 *최종시험 면접 예정일 기준 (24.1.19.)	○ 약사면허 소지자	
우대사항 *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(24.1.5.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분야 근무경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관련분야 : 약품 분석, 조제, 독극물 또는 마약류 분석 등 약학 분야 ○ 관련분야 연구실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관련분야 : 약품 분석, 조제, 독극물 또는 마약류 분석 등 약학 분야 * 연구실적은 2021.1.1.이후 SCI(E), KCI(KSCI)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○ 관련분야 석·박사학위 소지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관련분야 : 약물학, 생화학, 면역학, 미생물학, 생약학, 분석화학, 독성학 등 ○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영어성적은 검증가능기간을 고려하여 '24.1.26.후 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함 		
가점	○ 한국사능력검정시험(2급이상)		

<붙임_2>

영어능력검정 성적 기준표

시험의 종류	구분	기 준 점 수	비 고	
토 익 (TOEIC)	A	870점 이상		
	B	700점 이상 ~ 865점		
	C	700점 미만	미용시포함	
토 플 (TOEFL CBT)	A	PBT	590점 이상	
		CBT	243점 이상	
		IBT	97점 이상	
	B	PBT	530점 이상~589점 이하	
		CBT	197점 이상~242점 이하	
		IBT	71점 이상~96점 이하	
	C	PBT	530점 미만	
		CBT	197점 미만	미용시포함
		IBT	71점 미만	
텡 스 (TEPS)	A	452점 이상		
	B	340점 이상 ~ 451점 이하		
	C	340점 미만	미용시포함	
지텔프 (G-TELP)	A	Level 2의 88점 이상		
	B	Level 2의 65점 이상 ~ 87점 이하		
	C	Level 2의 65점 미만	미용시포함	
플렉스 (FLEX)	A	800점 이상		
	B	625점 이상 ~ 799점 이하		
	C	625점 미만	미용시포함	

- ※ 영어성적 평가 점수 기준 : 공무원임용시험령 「별표」 5급공무원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표 적용
- ※ 시험성적 구분표상 C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점수 배점을 하지 아니함 (0점 처리)
- ※ 각 시험 만점 : ① TOEIC(990점) ② TOEFL PBT(677점), CBT(300점), IBT(120점) ③ TEPS(990점)/NewTEPS:(600점) ④ G-TELP(100점) ⑤ FLEX(1000점)